

교원 연구년제 운영세칙

제정 1991.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16. 3.16
개정 1993. 3. 1 개정 2009. 7. 1
개정 2000. 1. 1 개정 2013. 3. 1
개정 2001. 6. 1 개정 2013. 9. 1
개정 2004. 1. 1 개정 2015. 3.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 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년의 정의) 이 세칙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 일정기간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 대학의 일상업무(강의, 학생지도 및 위원회 등)를 떠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허가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기간)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년 만료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6.3.16)

1.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6개월, 6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2. (삭제: 2016.3.16)

② 연구년의 기간은 학기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파견교원의 파견기간은 제1항의 연구년 신청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4조 제2호에 따라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파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1.)

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요청에 대해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본 대학 근무연수에 반영하여 연구년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6)

제4조(인원제한) 매학기 연구년 허가인원은 2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연수, 휴직 교원을 포함하여 학과 전임교원 총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허가인원 및 학과 전임교원 총수 산정시 제외한다. (신설: 2013.3.1)

1. 파견기관에서 인건비 등 전액을 부담하는 파견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파견 기간

2. 한국연구재단 등 대학의 필요에 의해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파견

3. 정관 제47조 제6호 또는 제11호에 의한 휴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
(신설: 2015.3.1.)(개정: 2016.3.16)

제5조(신분보장) 연구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의 신분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2. (삭제: 2008.3.1)
3.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 연구년 기간중 승진 등은 계속 시행한다.
4.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 (신설: 2013.3.1)(개정: 2016.3.16)

제6조(의무)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후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년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승인절차) 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 6개월전에 교원연구년신청서, 학과주임교수추천서, 연구년활동계획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직무대행자의 임명)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과에서는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서는 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강의
2. 학부학생의 지도업무
3. 대학원생 논문연구지도
4. 수탁과제연구
5. 기타 각종 보직 및 위원회 관련 업무

제9조(출장,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 연수 및 제4조 제1호에 의한 최초 1년 이내의 파견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1)

제10조(휴직과의 관계) ① 휴직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정관 제47조 제5호에 의한 휴직시에는 1년의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영리목적의 활동 금지)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중 본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산업체 등의 연구/산학협력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개정: 2016.3.16)

제12조(소환) 총장은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그 기간중 목적활동 위반시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전 규정인 교원 연구년제 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단, 제5조 제4호의 개정내용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연구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